

14.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3년 9월 27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4일
- 상정일자 : 제30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
제2차 문화복지위원회(2023년 10월 16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)

□ 제안이유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서 규정¹⁾한 대구광역시립박물관(근대역사관, 방짜유기박물관, 향토역사관)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14조)

1)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7조(운영 위원회)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국·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(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)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.

제12조(설립과 운영)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 ~ 제18조)
-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 ~ 제22조)
- 대관에 관한 사항(안 제23조 ~ 제27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규홍)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을 규정함.

| 명 칭 | 위 치 | 주요시설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구근대역사관 | 시 중구 경상감영길 67 | 상설전시실, 기획전시실, 체험실, 문화강좌실, 수장고 등 |
| 대구방짜유기박물관 | 시 동구 도장길 29 | 상설전시실, 기획전시실, 영상교육실, 수장고 등 |
| 대구향토역사관 | 시 중구 달성공원로 35 | 상설전시실, 교육실, 수장고 등 |

- 안 제4조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사무를 비영리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박물관의 관람 및 휴관 등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운영 시 수탁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관람료 징수와 그에 따른 관람권 발행, 관람료 면제 및 매표 업무에 관해 규정함.
-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시설관람 제한 대상과 전시관 내 제한 행위를 명시하고 전시품을 파손하거나 시설 훼손시 변상조치 또는 손해 배상 규정을 명시함.

-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, 회의,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유물구입과 기증, 관리 책임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
 - 유물 구입을 위해 ‘유물수집실무위원회’와 ‘유물수집심의위원회’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,
 - 소장자가 유물기증 시 ‘수증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기증·기탁자에 대한 예우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는 대관허가 및 대관료 납부·감면, 대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[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]

| 번호 | | 제목 | 주요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|
| 제1장 총칙 | 제1조 | 목적 | 조례의 목적 명시 |
| | 제2조 | 명칭 및 위치 | 조례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|
| | 제3조 | 운영시설 | 주요시설 규정 |
| 제2장 박물관 관리·운영 | 제4조 | 운영의 위탁 | 비영리 법인·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가능 |
| | 제5조 | 운영규정 | 조레이외에 관한 사항의 별도 규정 가능 |
| | 제6조 | 휴관 | 휴관일 명시 |
| | 제7조 | 관람 및 매표시간 | 관람 및 매표시간 규정 |
| | 제8조 | 관람료 | 관람료 명시 |
| | 제9조 | 관람료 면제 | 관람료 면제자 규정 |
| | 제10조 | 관람권 | 관람권 발행 명시 |
| | 제11조 | 관람의 제한 | 관람 제한 대상 및 전시실 내 제한 행위 명시 |
| | 제12조 | 행위의 제한 |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| 제13조 |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| 관람자 또는 대관자가 전시품·시설 훼손 시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규정 |
| | 제14조 | 기념품 | 홍보·마케팅을 위한 기념품 지급 규정 |
| 제3장 박물관 운영위원회 | 제15조 | 박물관 운영위원회 | 박물관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|
| | 제16조 | 구성 | 위원 구성, 임기 등 규정 |
| | 제17조 | 회의 | 위원회 회의 소집, 의결 등 규정 |
| | 제18조 | 수당 등 | 참석 위원 수당, 여비 등 필요경비 지급 규정 |
| 제4장 유물 수집 등 | 제19조 | 유물의 구입 | 유물 구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수집실무 위원회와 유물수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유물과 가격 결정 |
| | 제20조 | 유물기증 등 | 유물 기증 및 기탁 시 수증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 결정하고, 기증자 예우방안 등을 규정 |
| | 제21조 | 유물관리관 지정 등 | 소장작품관리관·출납원 지정 및 업무 규정 |
| | 제22조 | 유물의 보관 및 관리 등 | 소장작품 관리 및 손해보험 가입 규정 |
| 제5장 대 관 | 제23조 | 대관허가 | 대관사항 규정 |
| | 제24조 | 대관허가의 제한 | |
| | 제25조 | 대관료 | |
| | 제26조 | 대관료의 감면 | |
| | 제27조 | 대관허가의 취소 등 | |
| 제6장 보 칙 | 제28조 | 시설 사용허가 | 허가대상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르도록 규정 |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공 문화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‘박물관운영위원회’를 신설하고, 기획 전시와 순회 전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구광역시립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.

-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 3개 시설(근대역사관 방짜유기박물관 향토역사관)은 기존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산하 조직으로 「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」(폐지 '22.7.29.)를 근거로 운영해 오다가 2022년 10월부터 대구문화예술진흥원(박물관운영본부)에서 위탁운영을 추진한 이후 「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와 위탁기관 운영 내규 및 규정에 따라 운영해오고 있음.
- 다만, 위탁기관에서 운영의 세부사항에 대해 내부 규정등을 제정하여 대상 시설을 운영해 왔다 하더라도 법률상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,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을 현재 발의하는 것은 향후 관련 법규 제·개정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.
- 또한, 특별기획전시,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3개 시립박물관의 학예 연구 인력이 박물관별 각 1명 정도로 타 지자체 공립박물관과 비교해 적은 편임.
- 현재, 지역 박물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시립종합박물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구근대역사관 등을 주축으로 시립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, 학예전문인력 충원 등을 통해 박물관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〈박물관 시도별 평균지표 현황〉

| 지 역 | 박물관 수 | 1개관 당 평균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직원 수 | 학예직원 수 | 소장자료 | 연관람인원 |
| 서 울 | 130 | 22.18 | 7.80 | 36,479 | 45,886 |
| 부 산 | 33 | 11.36 | 4.03 | 11,867 | 15,287 |
| 대 구 | 17 | 10.88 | 3.94 | 23,474 | 33,528 |
| 인 천 | 30 | 5.77 | 2.63 | 7,240 | 22,418 |
| 광 주 | 12 | 14.42 | 5.25 | 20,918 | 31,960 |
| 대 전 | 15 | 6.47 | 2.20 | 33,118 | 6,429 |
| 울 산 | 11 | 7.73 | 2.73 | 14,373 | 32,251 |
| 세 종 | 7 | 3.14 | 1.71 | 35,953 | 26,575 |

<202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>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 의 | 답 변 |
|--------|-----|
| 질의 없음. | |

5. 토론요지

-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